_	
보	구
	J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1144호 2023. 4. 5. (수)

공 고

제2023-3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2-49)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2

제2023-395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공				
람				

발행 : 부산광역시 북구 편집 : 미래전략실 (☎309-5411)

공 고

●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3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2-49)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 1. 부산광역시 고시 제158호(1972.5.30.)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 되고,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1-62호(2001.12.2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49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 2. 사업시행지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5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가. 사업의 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46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로2-49호선)
- 사업의 명칭: 구포역 뒤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 확장 및 개설 (L=154m, B=6.7~8.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성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사업시행자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 (구포동)

마. 사업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 예정일: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준공 예정일: 2024. 12. 31.

바.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2023. 4. 5. ~ 2023. 4. 19. (14일 간)
-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309-4692)

부산도시계획아고라 홈페이지(http://www.busan.go.kr/build/agora)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편입토지

○ 토지: 북구 구포동 1060-316, 1060-523, 1060-527, 1060-202, 1060-522, 1060-526, 1060-200, 1060-525, 1060-334, 1060-524, 1060-530, 1060-529, 1060-497, 1060-528, 1060-516, 1060-521.

아. 지장물 : 해당없음

공 고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395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에 저촉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
- 가.'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기준'반영 (안 제2조)
 - 조례 제2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삭제하고'「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구성 한다'로 변경
- 나.'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범위 추가'에 따른 조례 반영(안 제3조, 제3조의2)
 - 조례 제3조제1호부터 7호까지 및 제3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심의사항'으로 변경
-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제10조(우선조치) 삭제
- □ 현행 조례 미비점 등 정비
- 가.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명시 (안 제3조제3호)
 - -'법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추가
-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간사 용어 정비 (안 제9조)
 - 아동복지 업무 담당 팀장에서'아동복지 담당 팀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아동청소년과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과(전화: 051-309-5112, FAX: 051-309-5119, E-mail: dakoyaki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제3조의2,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의 심의사항
- 2.「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 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 3. 법 제22조 및「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2조(구성)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아동 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삭 제>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인정하는 시설 등
-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심의한다.
- 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 3 조 (기 등)

-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u> | 1.「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u> 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심의 사항
 - 2.「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 3. 법 제22조 및「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삭 제>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항 및 제7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 ② 사례결정위원회<u>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u>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제2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⑤ <u>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u> <u>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u>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u>업무</u>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의20	(사례결정위원회)
MIUエーC	ᄭᅝᅙᇬᄁᇰᆇᄼ

1)	<u>부산광역시</u>	북구청장(이하	"구청증	<u> </u>
	<u>한다)은 법</u>	제12조제1항제2	2호부터	제8호
	까	지		의

② 사례결정위원회<u>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u> 사항은 영 제13조의 2를 따른다.

<삭 제>

		,
가동복지	담당	팀장이
	 가동복지	 아동복지 담당

제10조(우선조치) <삭 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아도보지신이위워히 3	구성·우영에 과하 조	레 익부개정조레아	
1 	이 6 그 시 급 기 간 되	10 604 66 7	네 골무겡エ네근	
· 성명(단체명) :				
· 주 · 소: · 연 락 처:				
 개정안 내용	의	 견	비고	